

제4장 예산 이용·전용·이체사용

「지방재정법」 제47조,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·전용·이체사용한 것은

1. 예산이용(0 건)	0 원
(1) 일반회계는	0 건)	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	0 건)	0 원
2. 예산전용(6 건)	121,400,000 원
(1) 일반회계는	6 건)	121,400,00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	0 건)	0 원
3. 예산이체(131 건)	51,145,403,000 원
(1) 일반회계는	131 건)	51,145,403,000 원
(2)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	0 건)	0 원 이며

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